

수도권 방역조치 강화

서울, 경기, 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(8.19.(수) 0시부터 적용)

- 서울·경기에서 인천까지 대상 지역 확대 · 고위험시설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
-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 집합금지

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 사항(8.19.~)

| | | |
|-------------|----|--|
| 집합·모임·행사 | |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 |
| 다중 이용 시설 | 공공 |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|
| | 민간 | <p>- 고위험시설 12종* (유통물류센터 제외) 운영 중단</p> <p>*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 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</p> <p>- 결혼식장, 영화관,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(12종*) 방역 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</p> <p>* 학원, 오락실, 일정규모이상 일반음식점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장, 영화관, 목욕탕·사우나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</p> <p>**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</p> <p>-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·휴원 권고</p> <p>*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</p> |
| 스포츠 행사 | | 무관중 경기 |
| 학교 | |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·군·구 원격 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/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* 고등학교는 2/3 수준 |
| 기관·기업 | 공공 | 유연·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(예: 전 인원의 1/2) |
| | 민간 |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|

교회
(서울·경기·인천)

비대면 예배만 허용,
대면 모임·행사·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(집합제한) 실시